

## 제11회 자율준수(CP)포럼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10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1회 자율준수(CP)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거래법과 자율준수를 활성화하고 경쟁당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자율준수포럼은 11회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사무처장을 초대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법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동의명령제도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신규 제도 도입 방안 및 조직 개편 문제, 그리고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과 행정지도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등 최근 공정위의 현안과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CP포럼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정위 허 선 사무처장이 밝힌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여당이 추진중인 순환출자금지법안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제안된 법안에 대한 논의일 뿐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아니다. 순환출자를 금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로 재벌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간접적이고 총량적으로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출총제로도 제어가 충분하다. 그러나 출총제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개선 혹은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내년에는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업적 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공자본 형성이나 의결권 제한 등 그 폐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기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독립기업과의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출총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금년에 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졸업제도'를 도입해 많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기업에서 벗어나고 있고, 내년 중 거의 모든 기업이 제외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출총제는 자연적으로 폐기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총제 졸업제도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정 노력과 시장경제 흐름에 의해 자동적인 졸업이 유도되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계획은 없다.

## ■ 동의명령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명령제도는 미국의 제도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정위와 피심인이 서로 합의할 경우 심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민간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한편, 공정위로서는 사건 유죄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의명령제도에 추가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은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카르텔을 다룰 때 많이 활용하고 있다.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형벌 수준을 감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의명령제도와 비슷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화의제도는 합의 조건에 있어서 피해자 보상, 파괴된 경쟁질서 회복, 재발 방지 보장장치 마련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도다.

무엇보다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소(私訴)제도로서, 민간인이 직접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적 판단을 받음으로써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 ■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논란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나 기업결합 조사 등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카르텔 조사의 경우는 합의의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위가 갖고 있는 임의조사권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을 필요로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권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카르텔 조사는 물증 확보가 필요할 뿐 인신 구속에 따르는 과잉 조사는 필요치 않아 현재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관법의 직접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 즉,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카르텔에 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 압수수색권이 필요한 것이다.

공정위는 강제수사권 도입 문제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지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 ■ 행정지도에 관한 공정위 입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행정·정책적으로 지도해서 지도 대상의 선의의 협조에 기초해

이뤄진 것을 행정지도라고 말한다.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대해 법에 의해 처리할 뿐이다.

개발연대시대에 익숙했던 행정지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러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각 부처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편법으로 동원한 행정지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카르텔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지도를 받았으니 면책해 달라는 주장은 공정위가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번 유선통신사업자 담합 사건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은 공정위이고, 이 판단이 옳은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은 거의 소송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추후에 알 수 있겠지만, 공정위는 자신있다.

### ■ 공정위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현재 조직개편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인사 발령을 통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소비자본부, 시장감시본부 등 4본부 40여개 팀으로 개편될 예정이지만, 인력 증원 없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해 시장감시본부에 편입시키고 기업집단과는 경쟁정책본부에 편입시키는 데 있다. 또한 기업결합 등 경쟁 담당부서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팀과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담당하는 지적재산권팀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된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60여명 규모로 운영될 서울 사무소도 신설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 특수한 사건 이외에는 정책 수립과 직권조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 ■ 기업에 바란다

각 기업이 돈 잘 벌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 공정위에 협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준수로 향후 시장이 경쟁중심적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혁신을 통해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사업을 잘 영위하면서 기업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위반 가능성이 높지만 경미한 수준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싶지는 않다. CP를 통해 공정위

를 거치지 않고 내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체 해결하기를 바라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결합과 같은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예측 가능한 사건들이기에 사전 심의를 받아 적절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인 카르텔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카르텔은 독점보다도 해악한 것이며, 다른 불공정행위와는 전혀 죄질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카르텔에 대해 절대로 관대해 질 수 없고 엄격한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됐음을 상기하고, leniency(자진신고감면제도)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 Q & A

**Q** 기업은 기업결합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제한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시 경제적 효율성을 얼마나 감안하는가?

**A** 기본적으로 기업결합은 죄가 아니다. 다만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경쟁 배제 우려가 높은 기업결합은 금지하는 것뿐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규모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성만을 본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반드시 감안하겠지만 경쟁제한성과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느냐 여부를 판단해 기업결합을 인정하거나 불허한다. 다만 기업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효율 극대화 등 기업결합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크고,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비록 경쟁제한적이어도 원칙적인 예외를 인정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 공정거래해외연수 보고서

본 연합회는 산업연구원 및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28명과 함께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호주 경쟁당국(ACCC)과 호주 CP전문가협회(ACI) 등을 방문하여 호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상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해외연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평가(등급)제도의 도입에 앞서 선진 경쟁당국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동 연수에는 산업연구원, KT,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SK(주), (주)LG상사, (주)KTF, 삼성전지(주), SK텔레콤(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암웨이(주), (주)포스코, (주)신세계, LG생활건강, 삼양사, GS-CALTEX정유(주), SK가스(주), SK C&C, 현대오일뱅크(주), LG전자, (주)LG TELECOM, 신세계 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소속의 임직원 28명이 참석하였다.

### 1. 호주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실태

- ▶ 호주 기업의 CP는 통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규준인 Australian Standard on Compliance(AS 3806)에 의거하여 설계되고 시행됨.
  - ACCC는 CP를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CP의 실효성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ACCC는 CP의 운영이나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음(민간기구인 ACI가 CP를 Review하거나 Monitoring하고 있음).
- ▶ 호주의 경우 기업의 CP는 주로 CP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설계되고 내용이 결정됨.
  - CP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범규준인 AS 3806에 의존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CP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기업 단위의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함.
- ▶ 호주의 CP는 기업, 경쟁당국과 법원이 상호 협력과 견제하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경쟁당국인 ACCC는 기업 스스로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기업 자체의 CP 운영을 강력하게 권장함.
  - 기업계는 자율준수전문가협회(ACPA)에 등록된 7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CP의 보급과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
  - 법원은 기업의 경쟁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해당기업의 CP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결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 ▶ 호주의 경우 CP의 도입과 운영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이나, 효과적인 CP의 존재 여부는 기업의 법적 위험(legal risk)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
  - 기업은 CP의 순조로운 도입과 정착을 증명하기 위하여 CP 도입후 3년간 매년 ACCC에 CP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음.
  - 3년에 걸친 운영성고가 만족스러울 경우 해당 기업은 ACCC의 경쟁법 위반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울 수 있음.
  - 법원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CP를 도입하고 운영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경쟁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경감해 주는 것이 관례임(ACCC vs. Australian Safeway Stores Pty Ltd의 판례).
- ▶ ACCC는 경쟁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행정결정(Section 87B of Trade Practices Act)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CP의 도입 또는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이 같은 조치를 통해 ACCC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와 위법 감시기구의 운영을 촉구하게 됨.
  - 기업에 대하여 CP의 도입이나 강화가 결정되면 ACCC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 호주의 경우 기업단위의 CP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규약(code of conduct, charters and voluntary standards)을 통해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간에 자율규제를 널리 활용하고 있음.
  - 기업간 행동규약은 기업 단위의 CP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 기업간 자율규약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소비자들의 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ACCC는 규약의 제정이나 운영에 관하여 기업 단위 CP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함.
- ▶ 호주의 자율준수전문가협회(ACI: Australian Compliance Institute)는 민간 주도에 의한 기구로, 자율준수를 기업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ACI는 대기업, 중소기업, CP컨설팅회사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CP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기업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설립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ACI의 활동을 통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CP의 확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다만 호주의 경우도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체적인 CP운영 능력에 한계가 있음.
  - ACI는 기업이 자율준수를 경영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공정거래, 지배구조, 품질, 안전 및 환경 등에서의 모든 법적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준수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호주의 경험으로 볼 때 CP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불만처리절차 (complaints handling procedure)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CP에 포함시키느냐는 것임.
  - 기업의 임직원, 소비자, 경쟁기업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경쟁법을 둘러싼 불만은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 따라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임직원은 자율준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함.
- ▶ 호주의 CP는 거의 예외 없이 CEO나 이사회 수준에서 전폭적인 자율준수 의사(total commitment to compliance)의 표명으로부터 시작됨.
  - 이는 기업의 CP는 결국 기업의 자율준수 풍토(culture of compliance)에 의해 결정되며 자율준수 풍토는 최상위에서부터 최하위에 이르기까지(from top to bottom) 일련의 경영혁신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임.
  - 기업이 최고경영층의 자율준수의지에 자기구속력(self-binding)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대중매체(mass media)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준수의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임.
- ▶ 호주 기업들은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manager)를 임명하는 일도 기업의 자율준수 풍토를 고양시키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음.
  - 호주 대기업의 경우 경쟁법 이외에 다른 법규의 자율준수도 중요한 경영사안이므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든 법규에 관하여 정통한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보통임.
  -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준수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가 상시적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자율준수관리자가 보고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 호주 기업들은 CP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이나 문서의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CP를 담당하는 조직은 통상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의 준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compliance manager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경쟁법 준수만을 위한 manager나 조직을 두는 기업은 극히 드뭄).
- ▶ 호주의 일부 대기업의 경우 CEO들은 자율준수를 전략적인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들 기업에서 자율준수는 단순히 법률전문가의 고용이나 편람의 작성 및 교육에 의한 경영상의 부가기능(add-on-function)이 아니고, 구매, 판매, 생산, 재무, 회계, 기술개발 등 기업의 모든 기능과 밀접히 연결되어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자율준수와 관련된 중대한 경영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interdisciplinary team)에 의해 최적의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 호주의 기업 CP에서 경쟁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통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조치는 매우 단호함.
  - 예를 들면 시정조치계획(Remedial Action Plan)이나 삼진아웃(Strikes) 등의 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용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
  - 삼진아웃제의 경우는 경고-문책-해고의 3단계를 규정하여, 행위의 중대성과 누적 정도에 따라 벌칙을 달리하고 있음.

## 2. CP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CP 모범기준의 개정

- ▶ ACI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기준인 Australian Standard on Compliance(AS 3806-1998)을 2006년초에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에 들어가 있음.
  - 이 기준은 ACI가 호주 경쟁당국의 요청에 의해 마련하였으며 이 기준의 목적은 공공기업이나 사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공해 주는 것임.
  - 이 기준들은 기업들이 법률이나 행동규범들을 준수하는데 있어 부족했던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고 교정해주기 위한 것임.

## 3. CP도입 시정조치 및 명령

- ▶ 호주의 경쟁당국인 ACCC는 1974년의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1974) 제87B조 시정조치(Draft Compliance Program Undertakings and Orders)를 명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4개의 TABLE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CP도입권고를 받는 기업들이 그 규모에 따라 CP의 핵심요소를 달리 적용한 공통안을 마련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ACCC는 CP에 대한 생각이 경험과 연구에 바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 4개의 TABLE(LEVEL1-LEVEL4)을 통해 각각 기업의 규모에 따른 효율적인 CP에 대한 ACCC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의 CP의 지표를 제공해 주고 있음. 예를 들면 1단계(LEVEL1)는 소규모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나 경쟁에 성공해서 CP가 필요없는 회사에 적용됨.



- 나머지 단계(LEVEL2-LEVEL4)은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며 ACCC는 2개의 보고서(REPORT)를 요구함. 이들 단계에서는 Compliance Advisor와 Compliance Reviewer를 두어야 함.
- ▶ ACCC는 CP 목적을 회사를 갱생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준수 문화를 갖추어 나가도록 해 주는데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위반사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범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에 두고 있음.
- 따라서 기업에 CP를 강제하는 것을 기업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래의 범위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함(Mark Quinane; ACCC Compliance Strategies Branch Director. 2005. 11. 3).

#### 4. 종합적인 시사점

- ▶ 호주의 CP운영은 경쟁당국이 게임의 법칙을 정하고 기업이 이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전형적인 시장지향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ACCC는 자율준수를 지속적이고 장기적(ongoing and long-term)인 경쟁정책목표로 인식하고 자율준수의 전도사적인 역할을 담당함(carrot and stick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
  - ACI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CP 도입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교육과 보급을 통해 CP의 실질적 이득을 지향하고 있음.
- ▶ 기업의 CP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제도는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
  - 기업은 CP를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 여부와 기업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적절한 CP를 도입함.
  - 일단 CEO나 이사회가 CP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여 CP의 실체가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기업은 내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업이미지의 향상,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족도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를 운영·관리함.
- ▶ CP의 도입과 운영은 자발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므로써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시킴.
  - ACCC는 기업이 범위반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CP를 통해 위법행위의 방지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전술한 Section 87B of Trade

Practices Act의 운용).

- 기업은 CP의 교육과 편람의 작성에 있어 일상적인 실례의 활용과 쉬운 용어의 선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CP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임.
- ▶ ACI에 의해 인증을 받은 Compliance Reviewer들이 기업의 Compliance Program에 대해 Review 해주고 Monitoring 해줌으로써 기업의 Compliance Program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함.
  - ACI는 회원이면서 CP의 전문가들을 일정 가격에 따라 3개 수준의 Compliance Reviewer로 나누어 기업의 CP를 Review 하고 있음.
  - 일례로 ACI가 인증하는 Compliance Reviewer가 되기 위해서는 27개 과목 중 13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2년 이상의 전문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LEVEL1-LEVEL3의 Compliance Reviewer로 구분함.
  - ACCC는 Compliance Reviewer는 거래관행법의 ISSUE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고 회사로부터 독립된 자일 것을 요구함.
  - ACCC는 Compliance Reviewer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지는 않으면 기업이 선택한 Compliance Reviewer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권고는 할 수 있음.
- ▶ ACCC는 CP를 통해 각 기업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범위반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CP가 범위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범위반 발생가능 영역을 각 기업이 인지하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CP를 변형시키고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보고서에는 ACCC가 권고했던 변화가 CP에 조정되어졌는지를 심사하며, 따라서 각 기업은 ACCC가 요구했던 CP의 변화나 조정이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함.
- ▶ ACCC는 향후에는 기업이 ACCC가 기업에 요구하는 2가지의 Report를 통해 CP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Feedback을 받고 CP의 개선여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임을 천명함(Mark Quinane; ACCC Compliance Strategies Branch Director. 2005. 11. 3.).
- ▶ ACCC는 범위반을 CP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며 CP는 잠재적인 범위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위반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강구책)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부산지역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본 연합회는 2005. 11. 4(금)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 부산사무소 강도영 과장과 정책국 총괄정책과 최영수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부산·울산 및 경남지역 총 87개 업체, 107명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확산을 도모하여 자율적인 공정경쟁풍토의 조성 및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가맹본부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2005. 11. 10(목) 연세빌딩 24층 국제회의실에서 총 40개 가맹본부의 임직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염규석 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분쟁해결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자상거래 분야 임직원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연합회는 2005. 11. 17(목) 사회복지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최영수 사무관과 전자거래보호과 최영근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35개 업체 임직원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자율적인 공정경쟁풍토의 조성 및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내용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